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구역조정 건의안

의안번호	462
------	-----

발의년월일 : '98. 10. 16
발의자 : 최동통 의원
외 3인

1. 주문

월악산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는 시민들이 84년 국립공원 지정이후 많은 생활상의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온바 공원구역을 재조정하는 시기로 맞아 공원구역과 용도지구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건의코자 함.

2. 제안이유

- 가. 1984년 12월 31일 월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계획 용도지구 지정상 주민의사와 지역여건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생활상의 불편과 재산권, 생존권의 침해를 받아오고 있음.
- 나.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금년이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하는 해인 만큼 금번기회에 주민의 민원사항들이 해결되고 제천지역의 관광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고자 함.

건 의 문

수신 :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제목 : 월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구역조정 건의

희망찬 21세기의 선진조국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립 공원의 적정 관리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온 국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지역에 소재한 월악산국립공원은 1984년 공원구역 지정당시 지역 주민의 의사와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의 지정되었으며,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지역 농촌주민들에게 더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된 3개 지구는 지리적인 조건이나 개발여건이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 지정된지 1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의 현실적인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의 드리오니 기필코 관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월악산국립공원은 1984년 12월 31일자로 지역일대 28.5km^2 가 국립 공원으로 일괄 지정고시 되었으며, 공원 면적중 용도별로는 자연보존 지구 7.2%, 자연환경지구 91.1%, 집단시설지구 0.3%, 취락지구가 1.4%로 구분되었고,

당시 공원지정 및 용도구역 구분에 지역민의 의견은 한마디도 취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따라 임의지정되어 공원법상 지정 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곳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원 계획 용도지구 지정시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등 각종 제약으로 주민의 불평이 고조되고,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민들은 무너진 담장하나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사실상의 생존권 및 민생유린을 당하여오고 있는바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정부불신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등산객 및 탐방객의 편의제공과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정하는 공원계획 용도지구인 「집단시설지구」는 월악산 국립공원 전체면적의 0.3%인 0.69km^2 에 불과하여 그야말로 허울좋은 이름뿐으로 반드시 확대지정이 필요하며,

기 지정되어 있는 3개소의 집단시설지구는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곳에 지정되는 등 지형여건이 불량하고 개발요인이 불비하여 개발하기가 힘들어 정부불신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상의 경계는 도로, 하천, 능선 등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획되어야 하나 월악산을 중심으로 등고선에 따라 경관이 좋은 지역을 위주로 구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역 관광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지역은 월악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개발이 둔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며,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해서도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 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원계획”으로의 현실적인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월악산국립공원은 당초부터 현지실정을 무시하고 지정되었음이 자명한 사실인바, 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금년도가 10년마다 시행하는 공원구역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해인 만큼, 현지 주민들은 국민의 정부를 맞아 이번만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바 타당성 조사기준에 의거 현지조사시 해당지역주민, 자치단체, 공원관리공단간 삼위 일체적 참여하에 현지실정을 감안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공원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덕산면 수산 1.2리, 금곡, 월악, 광천,

억수마을과 한수면 송계 1,2,3,4리 마을을 현지여건에 맞게 취락지구로 확대 지정하거나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켜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둘째, 공원입장객의 편의제공과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집단시설지구」가 현재 총 공원면적의 0.3%인 0.69km²에 불과한 바 입장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소한이라도 확대지정하거나, 당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전무한 기존의 집단시설지구 3개소를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변경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원의 경계가 도로, 하천, 능선 등을 경계로 구획되어야 하나, 월악산을 중심으로 등고선에 따라 구획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수산면 상천리 지역을 공원계획 변경시 충주호를 경계로 하여 단양군 경계까지 변경지정하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관광 개발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의회에서 건의 드리는 공원계획변경건의가 관철되어 그동안의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고, 천혜의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관님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998. 10. 31.

제천시의회의원 일동